

(붙임 2)

수 시 공 시

본 농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아 래

1. 공시사유 :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임직원의 징계 및 문책을 요구받음

2. 공시내용

- 대 상 : 1명
- 경 위 : 복무규정 위반(직장 내 성희롱)
- 주요내용 : 정직 1명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해당없음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징계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
2025년 10월 17일

동청도농업협동조합장 (직인)

경영공시 책임자	직 위	성 명	연락처	이메일
	전 무	황종현	054-372-3661	nh727088-1@nonghyup.com